

간호사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유 광 수 (전북대 간호학과)

서 거 석 (전북대 법학과)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문헌 고찰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3. 분석 방법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법인지
3. 법의식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수준
5. 법인지 경로, 요구에 따른 법의식 수준

V. 요약 및 결론

영문 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토마스 홉즈의 말은 진부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에 속한다. 홉즈가 말하는 자연상태란 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억지할 수 있는 조직된 권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홉즈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타인의 희생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를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의 힘에 희생된다고 한다.¹⁾ 따라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한데 이들 규범중에서도 인간을 통제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법규범이다. 이러한 법도 근대 시민국가가 수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Karl Larenz, Richtiges Recht, C. H. Beck, 1979, S. 34.

립되기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막강한 힘에 밀려 군주의 시녀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위해야만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란 사람의 지배로부터 법에 의한 지배로의 투쟁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적용되는 법이 정의에 기초를 둔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정권의 충실한 파수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국민대중 각자가 권리의식을 더욱 더 강화함으로써 강자에 의한 강자의 법을 약화시켜 균형상태를 이루어야 한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시민법제도의 가장 기본적 법개념인 계약조차 사회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며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반드시 타당한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³⁾ 이러한 영향이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기초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년이상 군사독재정권이 법을 정권의 시녀로 삼아 온통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를 자행해 오음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고 경원하는 풍토가 팽배해지게 되었으며 이것도 우리 법치주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에 관한 그간의 조사연구가 웅변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⁴⁾ 그러나 최근 일련의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법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의 각부문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환자의 권리선언이라든가 병원경영의 민주화 바람이 의료인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음으로써 의사중심의 다소 권위주의적인 도제식 사고방식을 탈피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병원도 환자에 대하여 의료라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봉사기관이라는 새로운 사고가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 간호사가 의료의 한축을 이루는 파트너인 가 아니면 단순보조자에 불과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어 개선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료과오분쟁의 와중에서도 간호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규명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법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느라 애먹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학계에서도 간호사들이 가지는 법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 즉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나 권리의식 그리고 준법정신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법의식상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렇다할 관심을 갖지 못 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2. 연구의 목적

법은 하나의 생활유형(Lebens Typus)이다. 그것

2) 이항녕, 법철학적 인간학, 평민사, 1979, 95쪽.

3)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 1982, 350쪽.

4) 종래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를 1980년 이후의 주요한 것만 보면 다음과 같다.

강구진, "채소자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장석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83; 이수성,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법학 제25권 2~3호(서울대 법학연구소), 1984;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16집(한양대 법학연구소), 1989; 이영란,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4호, 1989; 어인의 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청주대 법학연구소), 1990; 박상철,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등이 있다.

5) 박철우,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1/1(173), 67-68쪽.

은 사회의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의 뒤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사회 그 자체속에 위치하여 사회와 같이 있는 것이다.⁶⁾ 한 나라의 법질서는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유지 발전되며, 국민의 법의식은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의 계층간, 집단간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의 편차가 커져가고 있으며, 법의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법집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환자간호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동일하게 규격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가지는 의료과오에 대한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의 어느 집단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힘들고 고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더욱 절실하다.⁷⁾ 일상적인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대응은 개개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간호의 전부를 계획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⁸⁾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그 사회, 그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법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간호사들의 법의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검토해 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연구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권리의식, 준법정신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은 물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인식이란 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서 법이 가지는 도덕성, 징벌성, 지배성, 보호적 기능 등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란 재판과 법의 집행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그리고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란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나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끝으로 준법정신이란 일상생활에서 법령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고소, 고발정신 및 정의주의를 말한다.

한편 법의식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전상의 정의를 보면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또는 사회의식⁹⁾』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식에 관한 정확한 개념정의라고 할 수 없다. 법의식의 개념정의는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법의식과 유사한 개념인 법감정이라든가 법문화라는 개념을 법의식의 개념속에 포함시키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1. 광의설

이 설에 의하면 법의식이란 사회공동체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태를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보며 법적인식, 법

6) 이항녕, 앞의 책, 15쪽.

7) 이영자, 의료법을 중심으로(간호관계법령에 이상있다), 대한간호, 제19권 제3호(5~6월호), 1980, 6쪽.

8) 引田邦子, 看護現場における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 醫師法學9, 1994, 日本評論社, 30面.

9) 법률학사전, 법문사, 1985, 368쪽.

적가치판단 내지 평가, 법감정 등을 포함한다.¹⁰⁾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인식은 법규범, 법제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위결정의 좌표로 인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법적가치판단은 법규범, 법제도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과 그 기준을 가리키며 법감정은 법에 대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등을 말한다

영미법학계에서는 법의식을 법문화와 동의어로 파악하여 법 및 법체제와 관련된 태도, 가치관 및 견해를 의미한다.¹¹⁾ 일본의 경우에는 종래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문헌들이 법의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념짓지 않고 사용해 왔으나, 六本佳平 교수가 처음으로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다.¹²⁾

六本佳平 교수는 법의식이라는 용어가 극히 다의적으로 사용되나 크게 보면 다음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고 한다.¹³⁾ 첫째로는 현행 실정법규범의 내용에 대한 지식 내지 그것에 대한 태도(호악, 가치판단, 해석 등)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법의 각 분야에 따라 나누어 지며(헌법의식 등), 둘째로는 법(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방법(법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지 태도(법체제 내지 그것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호악이나 가치평가)로서 법체제 내지 법과정에 관한 다양한 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한다(규범의식, 권리개념, 준법정신, 계약관념 등등). 六本佳平 교수는 이 두 번째의 의미를 법관념이라고 부르고 있다.¹⁴⁾

법의식이란 법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서 법규범의 내적 동의와 결부되어 있는 이상적인 것인데 반하여, 법감정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으로서 법이상에의 지향, 즉 법양심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의식은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으로서 법질서에 대한 존경, 즉 법정신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법감정은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감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옹호하게 하는 윤리적 의무감, 즉 법성향(Rechtsgesinnung) 또는 법충성(Rechtstreue)을 의미한다.

2. 협의설

법의식을 법문화, 법감정과 구별하여 좁게 보는 견해이다.¹⁵⁾ 법의 심리적 현상형태에 있어서 인지적 요소(kognitives Elemente)가 지배하면 법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emotionales Elemente)의 뒤에 놓이게 되면 법감정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¹⁶⁾ 따라서 법의식에 있어서는 합리적 정신현상이 우세하고 법감정의 경우에는 비합리적 정신현상이 지배적이다.

법의식과 법감정을 달리 구별해 보면, 법의식은 인간이 사회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 관념이요, 어느 정도의 사고를 경유한 반성적 의식에 붙인 명칭임에 반하여, 법감정은 개별적 사태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주관적 반응이라고 한다.¹⁷⁾

10)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이수성, 앞의 논문, 68쪽 등.

11) R. M. Friedman, Law and Society, 1977. p. 121.

12) 石村善助, 法意識研究を考ふる, 専修法學論集, 専修大學 法學部, 55, 56合併号, 1992. 2, 225面.

13) 六本佳平, 日本人の法意識研究概観 - 法觀念を中心として, 法社會學 三五号, 1983, 15面.

14) 위의 글에서 六本佳平 교수는 첫번째 법의식의 의미가 Rechtsbewusstsein, Rechtsgefühl, general sense of justice, 또는 knowledge and opinion about Law에 해당하는데 비하여 두번째 법의식의 의미는 Rechtsvorstellung, idea of law에 해당한다고 한다.

15) M. Rmelin, Rechtsgefühl und Rechtsbewusstsein, S. 73; F. Klein, Die Psychologische Quellen des Rechtsgehorsams und der Rechtsgeltung, S. 46;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82, 227쪽.

16) M. Reh binder, (이영희, 최종고 공역), 법사회학회, 법문사, 1984, 171쪽.

17) 최종고, 앞의 책, 240쪽.

위에서 법의식의 개념에 대한 광의설과 협의설을 검토하여 보았다. 협의설은 이론적으로 법의식과 법감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법의식과 법감정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또한 법심리학적으로 엄격히 분석한다면 법의식이 의식화 되기까지는 법감정이라는 전단계를 거친다. 법감정은 법에 대한 직관적인 가치감정인데, 여기에는 법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직관적인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규범의식을 야기시키는 일차적 계기가 된다. 다음에 이런 법감정이 의식화되어 사유의 명료성이 얻어지면 법의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태도, 인식,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감정을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¹⁸⁾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1993년 5월 1일에서 1993년 7월 31일까지 전주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270명,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 간호사 76명, 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 77명,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 진료원 143명으로 도합 566명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의 내용을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면서도 그 타당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성하는데 유의하였다.

설문지 구성에서는 조사 내용별로 조사 항목을 정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난이도 및 집중도를 조정

후 각 설문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거쳐서 문항을 수정하였다.

설문지내용을 네 가지 동일차원의 항목인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권리의식, 준법정신으로 구분하였다. 법인식 영역은 간호사들이 법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를 검토해보는 영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이 도덕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든가, 법을 형벌과 연관지워 생각하고 있는가, 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6개의 세부문항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법에 대한 신뢰의식 영역은 법과 재판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8개의 세부문항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또한 권리의식 영역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적투쟁을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이다. 준법정신 영역은 일반생활 법령의 준수, 고소, 고발정신 등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8개의 문항을 만들어 측정하였다. 4개 영역에 걸친 29개 문항을 모두 Likert 형의 4점척도(four point scale)로 구성하고 각 문항의 선택지를 『정말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로 하여 1점부터 4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던 바 그값이 0.932로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모두 컴퓨터에 의거, 집계 분석되었다. 일차적으로 각 변수의 단순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및 교차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의식 네개 차원의 점수 및 종합 점수가 산정되었다. 사용된 모든 통계처리 방법은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18) 양승두. 앞의 논문. 356쪽.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인원수	비율(%)
연령	21~25	116	29.5
	26~30	169	31.1
	31~35	83	14.7
	36~40	74	13.3
	40 이상	74	13.3
학력	간호 고등학교	36	6.4
	간호 학교	38	6.9
	간호 전문 대학	442	78.1
	간호학과	49	8.7
	대학원	1	0.2
결혼 상태	미혼	254	44.9
	기혼	303	53.5
	기타	9	1.6
종교	기독교	240	42.4
	카톨릭	90	15.9
	불교	25	4.4
	원불교	52	9.2
	무	159	28.1
근무 분야	병원	270	47.7
	보건소	76	13.4
	학교	77	13.6
	보건 진료소	143	25.3
근무 경력	1년 이내	266	47.0
	1~5년	161	28.4
	6~10년	69	12.2
	11~15년	33	5.8
	16년 이상	37	6.5
합계		566	100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을 살펴보면 연령은 26~30세 그룹이 31.1%, 21~25세 그룹이 29.5%로 나타났으며 20~30세 그룹이 60.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7세로 나타나 결혼 등에 의해 직장을 떠나는 간호사도 있겠으나, 간호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학력은 간호전문대학이 78.1%로 대부분이고 대학원출신은 1명이어서 간호전문직의 질적인 향상을 위

해서는 간호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3.5% 미혼이 44.9%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룹이 42.4%, 카톨릭을 믿고 있는 그룹이 15.9% 원불교를 믿고 있는 그룹이 7.4% 불교를 믿고 있는 그룹이 4.4%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71.9%,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룹이 28.1%로 나타났다.

근무분야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47.7%,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간호사가 13.4%, 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가 13.6%, 보건진료원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이 25.3%였다.

근무경력은 1년 이내 그룹이 47.0%, 1~5년 그룹이 28.4%, 6~10년 그룹이 12.7%, 11~15년 그룹이 5.8%, 16년 이상 그룹이 6.5%로 나타났다.

2. 법인지

간호사가 법을 인지하는 경로<표 2>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78.6%가 대중언론매체인 신문, TV를 통하여 생활법률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박¹⁹⁾의 연구에서도 74.9%로 높게 나타나 대중언론매체가 끊임없이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게 하고 비판할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법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언론매체, 홍보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간호사의 법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간호사가 법적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를 통해서 법을 인지했다는 그룹은 1.9%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재학기간이 법인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재 간호학과 교과과정 속에 법학개론 과목 조차도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따라

서 최소한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법학개론과목 정도라도 포함시켜서 법 일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간호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에 관련된 법률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사 법인지 욕구면을 보면 조사결과 신문에 실리는 법령기사나 통장의 약관을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²⁰⁾의 연구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학계나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에 대해 무작정 복잡한 것으로만 치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관청의 민원상담실이나 소비자보호 단체를 방문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가 하는 항목에서는 『자주 있었다』와 『가끔 있었다』가 87.1%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은 박²¹⁾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박의 연구에 의하면 역으로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7.5%이었다. 이것은 간호사들이 평소 법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청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 달려가 해결한 뒤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표 2> 연구대상자의 법인지 경로, 법인지 욕구

특성	분류	인원수	비율(%)
법인지 경로	대중 언론 매체(신문, TV)	445	78.6
	주위 사람	65	11.5
	책	15	2.7
	학교	11	1.9
	사건	30	5.3
신문에 실리는 법령 기사	자세히 본다	11	1.9
	대충 본다	101	17.8
	거의 보지 않는다	375	66.3
	전혀 보지 않는다	79	14.0
통장 약관	자세히 본다	11	1.9
	대충 본다	79	14.0
	거의 보지 않는다	316	55.8
	전혀 보지 않는다	159	28.1
민원 상담실, 소비자 보호 단체 상담	자주 있었다	404	71.4
	가끔 있었다	100	15.7
	한번 있었다	54	9.5
	전혀 없었다	8	1.4
합 계		566	100.0

19) 박상철. 앞의 논문 63쪽

20) 위의 논문 65쪽

21) 위의 논문. 65쪽.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무관심해져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통하여 간단한 생활법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

3. 법의식

합법성과 정당성은 법치주의를 지탱해 주는 양축을 이룬다. 법의식도 결국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사람이 준수하지 않으면 제정하여도 이익이 없다」라는 법언처럼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법치주의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²²⁾

간호사의 법의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영역을 4개로 나누어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으로 분류하였다. <표 3>

4개 영역 29문항에 대한 전체 법의식의 총평균 평점은 2.469로 나타났으며, 법인식이 2.676으로 가장 높았고, 준법정신이 2.543,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 2.458,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2.198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간호사의 법의식이 4점 척도상의 중위점인 2.5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호사에게 성직자에 버금가는 봉사정신 내지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어 자기 의사나 감정에 따르는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준법정신은 높은 반면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법인식영역에서는 법의 정당성, 법의 형벌성, 간호와 법의 관련성, 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평균 평점은 2.676으로 나타났다. <간호와 법은 무관하지 않다>가 3.451로 가장 높고 <법은 사회적 강자의 편>이 2.901, <법은 모두 정당하다>가

2.776 순으로 나타났고, <사법시험 합격은 과거급제>가 2.099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간호사들은 간호업무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법과 접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사법시험을 과거급제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사회적 평화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법을 국민을 보호해 주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법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적 전통하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라든가 해방후의 독재정권, 그리고 최근의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법이 통치의 수단으로만 작용해 오고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신뢰의식은 법의 공정성, 법적용의 일반성, 법의 타당성, 재판의 공정성을 통하여 쌓이는 것이므로 법 자체가 단인에게 평등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의 집행도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이라 이른바 문민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요즈음 까지도 악법개폐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아직도 법의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찰권의 남용과 불법·편파 수사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도 그간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²³⁾ 요컨대 우리의 법현실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법을 정치적 지배의 도구나 기득권 옹호의 장치쯤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벗기기에는 아직도 멀었다.²⁴⁾ 검찰의 칼날이 정권안보적 차원에서만 번득이고 「법대로」라는 말이 강자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국민들이 가지는 법에 대한 신뢰의식은 땅에 떨어질

22) 위의 논문 77쪽

23) 이영란, 앞의 논문 268쪽

24) 김일수, 법·인간·인권, 박영사, 1992, 23쪽.

<표 3> 영역별 법의식

법의식	Mean±S.D
① 법은 모두 정당하다.	2.776±0.803
② 법은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468±0.885
③ 간호와 법은 무관하지 않다.	3.451±0.714
④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2.366±1.014
⑤ 법은 사회적 강자의 편이다.	2.901±0.660
⑥ 사법시험합격은 옛날의 과거급제와 같다.	2.099±0.760
합계	2.676±0.806
법에 대한 신뢰의식	Mean ± S.D
① 법은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2.118±0.806
②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	3.512±0.632
③ 법은 적용대상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117±0.748
④ 법은 간호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2.511±0.711
⑤ 배경있고 돈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한다.	1.972±0.773
⑥ 요즘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이 위에 있다.	2.193±0.886
⑦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늘 요령좋은대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보는 것 같다.	1.841±0.699
⑧ 국가가 관청과 법률적으로 다투어 승소하기란 아주 어렵다.	2.401±1.074
합계	2.458±0.791
법에 대한 권리의식	Mean ± S.D
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2.210±0.850
② 행정관청으로 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1.813±0.778
③ 정부나 국회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 필사적으로 저지운동을 하겠다.	1.608±0.648
④ 불량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겠다.	2.714±0.813
⑤ 돈을 남이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1.873±0.830
⑥ 이유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을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2.405±0.676
⑦ 타인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 화해하는 편이 좋다.	2.763±0.724
합계	2.543±0.745
법에 대한 준법정신	Mean ± S.D
① 돈을 빌려 줄 때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차용증서를 받아둔다.	2.253±0.899
② 거래시에는 영수증을 주고 받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481±0.703
③ 관청에 해야하는 각종신고는 꼭 정해진 기간안에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256±0.826
④ 거리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등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웬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	2.163±0.653
⑤ 직장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고소, 고발하겠다.	2.845±0.751
⑥ 사업하는데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해결한다.	1.988±0.563
⑦ 자신과 친한 사람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눈감아 준다.	3.163±0.742
⑧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3.196±0.819
합계	2.543±0.745

수 밖에 없다.

법에 대한 신뢰의식영역에서 총 평균평점은 2.458로 나타났는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가 3.512로 가장 높고 <법의 적용대상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2.511로 나타나 우리 법이 내용면에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이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궁극적인 장치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2.4%에 달했다고하는 박²⁵⁾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법에 대한 권리의식 영역에서는 총 평균평점이 2.198로 나타나 중위점보다 약간 낮았다. <타인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 화해하는 편이 좋다>가 2.7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단체에 고발한다>가 2.714, <이유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 2.405로 나타나 타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간호사가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법이전에 상식을 근거로 화해하려는 동양적인 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법은 알기 어렵고 절차만 복잡하여 피해자를 귀찮게 하므로 실질적인 권리내지 피해구제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반의 생각이 간호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정부나 국회가 자신에게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경우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가 1.608, <행정판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가 1.803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관청과 대립해보아야 이익될 게 없으니 잡자코 있는 편이 낫다는 전

통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준법정신영역에서는 총 평균평점이 2.543으로 나타났는데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가 3.196,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눈감아 준다> 3.163로 나타나 국민에 대한 박²⁶⁾의 의식조사와는 정반대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악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희박하고 고발정신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수준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근무분야, 근무경력과 법의식과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값을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연령에 따른 법의식 수준의 전체 법의식은 $p < 0.05$, 준법정신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법의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법의식, 준법정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조사대상자인 간호사의 경우 전문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조직사회의 규범이나 규정을 지키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간호사의 준법의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 모두 유의한 차가 없었다. 그것은 전체 간호사의 최소한 90% 정도가 간호전문대학 이상 4년제 간호학과출신이거나 나아가서는 대학원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에 의한 법의식 편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상태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법의식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법의식은 기타가 2.78, 법에 대한 신뢰의식은 미혼이 2.44,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미혼이

25) 박상철, 앞의 논문, 79쪽.

26) 위의 논문 90쪽.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법의식 수준

	범 인 식	범에 대한 신뢰의식	범에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	합 계	
연령	21~25	2.61±0.44	2.45±0.38	2.25±0.37	2.41±0.37	
	26~30	2.67±0.45	2.41±0.34	2.14±0.37	2.42±0.38	
	31~35	2.66±0.31	2.37±0.31	2.16±0.38	2.44±0.33	
	36~40	2.68±0.40	2.53±0.32	3.26±0.39	2.50±0.36	
	40이상	2.74±0.46	2.48±0.37	2.17±0.46	2.51±0.43	
	소 계	2.66±0.36	3.26±0.34	2.56±0.39	2.48±0.35	
	F	1.723	0.821	2.184	4.864*	3.264*
학력	간호고등	2.76±0.38	2.45±0.45	2.15±0.43	2.54±0.33	2.48±0.40
	간호학교	2.68±0.39	2.57±0.35	2.21±0.50	2.49±0.46	2.49±0.42
	간호전문대학	2.66±0.36	2.43±0.33	2.20±0.37	2.47±0.34	2.44±0.35
	간호학과	2.62±0.41	2.44±0.43	2.19±0.43	2.48±0.33	2.43±0.40
	대학원	2.50±0.00	2.63±0.00	2.00±0.00	2.41±0.00	2.39±0.00
	소 계	2.64±0.39	2.50±0.39	2.15±0.43	2.40±0.45	2.45±0.39
	F	0.982	1.248	0.206	0.582	0.416
결혼 상태	미혼	2.62±0.39	2.44±0.37	2.22±0.38	2.50±0.31	2.45±0.36
	기혼	2.69±0.34	2.43±0.30	2.18±0.40	2.47±0.37	2.44±0.36
	기타	2.78±0.40	2.29±0.33	2.06±0.41	2.41±0.36	2.38±0.38
	소계	2.70±0.38	2.39±0.34	2.15±0.39	2.46±0.35	2.42±0.37
	F	3.200*	0.824	1.027	1.167	4.573*
종교	기독교	2.66±0.37	2.48±0.33	2.21±0.39	2.47±0.34	2.46±0.37
	카톨릭	2.70±0.38	2.37±0.36	2.11±0.40	2.49±0.12	2.42±0.39
	불교	2.68±0.23	2.45±0.33	2.10±0.34	2.50±0.34	2.43±0.31
	원불교	2.73±0.37	2.49±0.35	2.29±0.32	2.51±0.30	2.51±0.34
	무	2.62±0.35	2.42±0.39	0.23±0.34	2.48±0.32	2.44±0.35
	소계	2.67±0.34	2.44±0.35	2.19±0.36	2.49±0.34	2.45±0.35
	F	0.959	1.873	2.312	0.368	0.786
근무 분야	병원	2.68±0.39	2.44±0.36	2.23±0.33	2.52±0.31	2.47±0.34
	보건소	2.71±0.36	2.49±0.33	2.19±0.38	2.51±0.40	2.46±0.36
	학교	2.59±0.38	2.48±0.39	2.19±0.43	2.49±0.33	2.44±0.38
	보건진료소	2.65±0.34	2.38±0.33	2.09±0.34	2.41±0.37	2.38±0.35
	소계	2.66±0.37	2.45±0.35	2.18±0.37	2.48±0.35	2.44±0.36
	F	0.387	1.858	5.953**	4.298*	5.43**
근무 경력	1년이내	2.64±0.00	2.38±0.00	2.00±0.00	2.48±0.00	2.46±0.00
	1~5년	2.68±0.36	2.45±0.34	2.26±0.36	2.51±0.33	2.47±0.35
	6~10년	2.66±0.40	2.43±0.33	2.18±0.44	2.50±0.42	2.44±0.39
	11~15년	2.82±0.39	2.44±0.44	2.22±0.40	2.55±0.28	2.48±0.38
	15년이상	2.83±0.37	2.44±0.35	2.51±0.34	2.65±0.34	2.57±0.35
	소계	2.73±0.38	2.43±0.37	2.23±0.39	2.54±0.34	2.48±0.37
F	0.494	0.023	1.975	4.096*	1.953	

*p < 0.05 **p < 0.01

2.22, 준법정신은 미혼이 2.50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전체 법의식, 법인식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법인식은 기타가 2.78, 법에대한 신뢰의식은 미혼이 2.44,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미혼이 2.22, 준법정신은 미혼이 2.50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전체 법의식,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 모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체 법의식은 2.51, 법인식이 2.73, 법에대한 신뢰의식이 2.49,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2.29, 준법정신이 2.51로 나타났는데 종교 중에서 원불교를 믿는 그룹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원불교재단인 원광대학교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연수, 원불교 경전강의 등을 통하여 간호사의 법의식을 고양시킨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하는 곳에 에대인가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전체 법의식이 $p < 0.01$,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p < 0.05$, 준법정신이 $p < 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으며, 법인식, 법에 대한 신뢰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체 법의식은 병원간호사가 2.47, 보건진료원이 2.38이며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병원 간호사가 2.23, 보건진료원이 2.09이며, 준법정신은 병원 간호사가 2.52, 보건진료원이 2.41로 나타나 병원간호사가 전체 법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이 가장 높고 보건진료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병원의 경우에 환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형, 증상도 다양하고 특히 중환자, 응급환자가 많아 각종 의료사고 내지 의료과오에 대비한 법적 방어 및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온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반하여 보건진료원의 경우에는 벽·오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각종 사건이나 사회변화에 접할 기회가 적어 법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법적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간호학과 교과과정속에 들어 있는 의료법규시간이나 대학졸업후의 보수교육시에 법일반, 생활법률은 물론 나아가서 의료과오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무경력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단지 준법정신에서만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준법정신은 15년 이상 그룹이 2.65이었고, 11~15년그룹이 2.55, 6~10년 그룹이 2.50, 1~5년그룹이 2.51, 1년내 그룹이 2.48로 나타나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일수록 준법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법인지 경로, 요구에 따른 법의식 수준

법인지 경로가 무엇인가에 따른 법의식 수준 <표 5>은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고 법인식, 법에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체 법의식은 「신문, TV를 통하여」가 2.46, 「학교교육을 통하여」가 2.45 「주위 사람을 통하여」가 2.43, 「책을 통하여」가 2.40, 「사건을 통하여」가 2.36순으로 나타났다.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신문, TV를 통하여」가 2.20, 「학교교육을 통하여」가 2.29, 「주위 사람을 통하여」가 2.26, 「책을 통하여」가 2.19 「사건을 통하여」가 1.95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지 욕구에 따른 법의식 수준에서 신문에 실리는 법령기사는 법인식은 $p < 0.05$, 준법정신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고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전체 법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통장의 약관 규정은 법인식에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고 법에 대한 신뢰의식, 법에 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 전체 법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신문에 실리는 법령기사, 통장의 약관 규정은 자세히 볼수록 법인식과 준법정신은 높아진 반면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나 법에대한 권리의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원 상담실, 소비자 보호원 상담을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전체 법의식이 $p < 0.01$ 법에대한 신뢰의식이 $p < 0.01$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법인식, 준법정신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체 법의식은 「가끔 있었다」가 2.57, 법에 대한 신뢰의식은 「자주 있었

<표 5> 법인지 경로에 따른 법의식 수준

법인지 경로 \ 법의식 분야	법인식	법에대한 신뢰의식	법에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	Total
법을 알게된 동기					
신문, TV	2.68±0.36	2.45±0.34	2.20±0.38	2.49±0.35	2.46±0.36
주위사람	2.59±0.42	2.44±0.37	2.26±0.37	2.44±0.32	2.43±0.37
책	2.52±0.44	2.37±0.49	2.19±0.48	2.52±0.37	2.40±0.45
학교	2.65±0.32	2.52±0.51	2.29±0.49	2.36±0.33	2.45±0.41
사건	2.66±0.31	2.36±0.39	1.95±0.41	2.47±0.31	2.36±0.36
소계	2.66±0.37	2.44±0.35	2.20±0.39	2.48±0.34	2.44±0.39
F	1.464	0.671	3.416*	1.427	1.659
신문에 실리는 법령기사					
자세히 본다	2.69±0.39	2.63±0.34	2.39±0.52	2.54±0.48	2.51±0.43
대충본다	2.56±0.36	2.46±0.36	2.18±0.39	2.48±0.32	2.45±0.36
거의 보지 않는다.	2.50±0.35	2.42±0.33	2.19±0.37	2.47±0.33	2.43±0.35
전혀 보지 않는다.	2.43±0.40	2.50±0.38	2.23±0.43	2.43±0.39	2.49±0.40
소계	2.67±0.36	2.44±0.35	2.20±0.39	2.48±0.34	2.45±0.36
F	4.834*	0.834	1.677	3.693*	1.962
통장의 약관 규정					
자세히 본다	2.74±0.31	2.49±0.44	2.20±0.40	2.50±0.53	2.41±0.34
대충 본다	2.64±0.37	2.41±0.36	2.08±0.38	2.49±0.32	2.39±0.36
안 본다	2.68±0.36	2.46±0.34	2.21±0.39	2.44±0.34	2.46±0.35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른다.	2.63±0.38	2.42±0.38	2.22±0.38	2.42±0.33	2.44±0.37
소계	2.66±0.35	2.44±0.35	2.20±0.39	2.48±0.34	2.45±0.36
F	3.133*	1.267	0.352	0.607	0.751
민원상담실 소비자 보급원 상담					
자주 있었다.	2.65±0.37	2.57±0.35	2.31±0.39	2.47±0.33	2.44±0.36
가끔 있었다.	2.64±0.39	2.49±0.37	2.22±0.40	2.49±0.34	*2.57±0.38
한번 있었다.	2.71±0.32	2.43±0.32	2.20±0.33	2.51±0.31	*2.46±0.32
전혀 없었다.	2.86±0.28	2.42±0.37	2.19±0.64	2.55±0.33	2.46±0.41
소계	2.66±0.36	2.49±0.44	2.23±0.40	2.48±0.35	2.45±0.43
F	0.903	4.933**	6.884**	2.517	5.017**

*p < 0.05 **p < 0.01

다」가 2.57, 법에대한 권리의식은 「자주 있었다」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원상담실, 소비자보호원과 상담을 함으로써 법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므로 민원상담실, 소비자 보호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몽하고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법의식 수준, 법의식과 제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270명, 보건간호사 76명, 양호교사 77명, 보건 진료원 143명 도합 56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1993년 5월 1일부터 1993년 7월 31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간호사의 법의식을 법인식, 법에대한 신뢰의식, 법에대한 권리의식, 준법정신으로 분류하여 수정 보완하여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치,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을 적용하였다.

분석된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 20~30세 그룹이 60.6%, 학력은 간호 전문대학졸업 그룹이 78.1%, 종교는 기독교를 믿는 그룹이 42.4%, 근무분야는 임상간호사가 47.7%, 근무경력은 1년이하 그룹이 47.0%를 차지하였다.

2. 법인지 경로는 대중 언론 매체(신문, TV)를 통한 경우가 78.6%로 나타난 반면에 학교를 통해서 법을 인지했다는 그룹은 불과 1.9%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매스컴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측면도 있으나, 학교교육이 법인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재학시 법률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근 최소학점인정전공제 실시의 여파로 여러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종래 법률관련 과목으로서 유일하게 설강되어 왔던 「의료법규」과목마저 전공과목에서 삭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사들에게도 정기보수교육시간이나 연수를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률강의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소망스럽다.

3. 전체 법의식 평균평점은 2.469이며, 법인식이 2.676으로 가장 높고 준법정신이 2.543, 법에 대한 신뢰의식이 2.458, 법에 대한 권리의식이 2.198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준법정신은 높은 반면, 법에 대한 권리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최대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려 하거나 관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법의식 수준은

연령 : 전체 법의식 $p < 0.05$, 준법정신 $p < 0.05$

결혼상태 : 법인식 $p < 0.05$

근무분야 : 전체 법의식 $p < 0.01$, 법에 대한 권리의식 $p < 0.05$ 준법정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ABSTRACT=

A Study on Law Consciousness of Nurses

Kwang Soo You (Dept. of Nursing,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Geo Suk Suh (Dept. of Law, Chon 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get grasp the law consciousness of nurse in order to estimate a degree of law cognition, confidence consciousness toward law, consciousness of right and law-abiding spirit that nurses have. This paper made a survey of 566 nurses who were employed in general hospital, health center, school and health-clinic of chonju-city. Questionnaire were composed 29 items through four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urvey showed that the role of university and hospital was insignificant for nurses in recognizing law. Consequently, not only hospital but also university ought to insert law in education curriculum or training cours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troduction

1)necessity of study

2)purpose of study

2. Literature study

3. Method of study

1)subject of study

2)means of study

3)method of analysis

4. Results of study

1)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2)law cognition

3)law consciousness

4)law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cs

5)law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course of law cognition and needs

5. Summary and Conclusion